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11. 12 선고 2024가단115518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변론 종결2024. 9. 10.

판결 선고2024. 11. 12.

주 문

-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. 1.부터 2024. 7. 2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김주식

별지